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2897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0나20337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2897 판결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4. D

변론 종결2020. 7. 17.

판결 선고2020. 8.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571,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572,728원 및 그 중 815,631,52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8. 12. 12. 접수 제118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8.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8. 12. 12. 접수 제1180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 2) 피고 C는 2007. 2. 1. 피고 B과 혼인하였다가 2019. 2. 27. 협의이혼하였다.
- 3) 피고 D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서를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라고 하며, 개별 신용보증 약정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순번○ 신용보증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2017. 10. 26.	E	450,000,000	2018. 10. 26.	90%
2	2018. 5. 4.	F	272,000,000	2019. 5. 3.	85%
3	2018. 5. 4.	G	85,000,000원	2019. 5. 3.	85%

2)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제13조 변제 등의 총당순서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원고의 회수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총당 대상 대위변제금이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율은 2016. 2. 1.이후부터는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대출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

2017.10. 26.	H은행	500,000,000원	이 사건 순번 1번 신용보증 약정
2018. 5. 4.	I 은행	320,000,000원	이 사건 순번 2번 신용보증 약정
2018. 5. 4.	I 은행	100,000,000원	이 사건 순번 3번 신용보증 약정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18. 12. 27.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9. 4. 25. 이 사건 순번 1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H은행에 457,142,301원을, 2019. 4. 25. 이 사건 순번 2, 3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I은행에 합계 362,449,873원(= 이 사건 순번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6,152,284원 + 이 사건 순번 3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86,297,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3. 26.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1,940,120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단10308 가처분 비용 654,650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10078 가처분 비용 1,285,470원)이다.

마. 원고의 구상금채권 일부 회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중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60,650원을 회수하였다.

<표>

2019. 4. 25.	3,835,470원	이 사건 순번 1 신용보증 약정 관련
2019. 4. 25.	95,380원	이 사건 순번 2 신용보증 약정 관련
2019. 4. 25.	29,800원	이 사건 순번 3 신용보증 약정 관련
합계	3,960,650원	

바.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가) 피고 B은 2008. 5. 28. J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 받아 2008.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8. 12. 11.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질을 지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8. 12. 12.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571,644원(= 원고의 이 사건 순번 1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된 H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57,142,301원 + 원고의 이 사건 순번 2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된 I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76,152,284원 + 원고의 이 사건 순번 3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된 I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6,297,589원 +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40,120원 - 원고의 회수금 합계 3,96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20. 2.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기각 부분

1)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한 제1의 마.항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인 2019. 4. 25.부터 위 각 금원의 회수일인 2019. 4.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과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액 중 일부 금액의 회수일이 같은 날이라면, 그 회수된 금액에 관하여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 C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사실, 천안시청, 구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K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 L조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817,571,644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L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 I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325,874,000원, M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68,526,000원, N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7,086,000원, O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30,267,000원, P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59,053,000원 등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이 위와 같은 재산상태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외형상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피고 C는,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기에 앞서 피고 B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8. 12. 12.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2. 27. 피고 C와 피고 B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가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증여의 형식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함부로 이를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L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남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J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 C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부친인 Q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J를 대신하여 J의 채권자들이었던 R, S, T에게 J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J가 구상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의 계좌에서 2008. 9. 11. R의 계좌로 24,220,000원, 2008. 9. 12. T의 계좌로 6,000,000원, 2008. 9. 19. S의 계좌로 42,5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② 피고 C의 부친인 Q이 2008. 9. 18. 5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45,412,000원이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원인이 되었던 자금이 피고 C 또는 피고 C의 부친인 Q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부친인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이 2019. 9. 60. 6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중 59,5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 C가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그렇다면,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 B과 피고 C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함에 따라 피고 B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다른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피고 B이 피고 A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가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약 12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사노동 등을 제공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③ 이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피고 C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피고 D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된 날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형상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 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행위를 채무자인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행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기찬

판사권혁준

판사김창용

별지

1) 주식회사라는 표기는 생략하였다. 이하 같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2019. 4.

25.은 원고가 H은행과 I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이다.